

[별표 1] <개정 2014.9.25.>

어항지정의 기준(제10조 관련)

	국가어항					지방어항					어촌정주어항	마을공동어항
지정 기준	1. 다음 5개 기준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 충족하는 항 · 포구일 것					1. 다음 3개 기준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충족하는 항· 포구일 것					현지어선의 척수 가 20척(어업의 근거리 또는 해상 교통·관광·유통 의 입지여건을 갖 추어 개발 잠재력 이 높은 항·포구 로서 시·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10척) 이상인 항· 포구일 것	국가어항, 지방 어항, 어촌정주 어항 외의 항· 포구일 것
	구분		동해안	서해안	남해안	구분		동해안	서해안	남해안		
	현지 어선	척수	70척 이상	70척 이상	70척 이상	현지 어선	척수	30척 이상	30척 이상	30척 이상		
		총톤수	450톤 이 상	280톤 이 상	360톤 이 상		총톤수	90톤 이상	70톤 이상	80톤 이상		
	외래어선 이용(연 간)		100척 이 상	100척 이 상	100척 이 상	여객선 및 유선 · 도선 운항	「해운법」에 따른 여객선과 「유 선 및 도선 사업법」에 따른 유선 · 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2왕 복 이상					
	위판고(委販高)		연간 200톤 이상(어선 이용 어업에 한정한다)									
	여객선 및 유선· 도선 운항		「해운법」에 따른 여객선과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에 따른 유선·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4왕복 이상									
	2.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% 이상을 충족할 것					2.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% 이상 을 충족할 것						

※ 비고:

1.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지정기준을 적용할 때 현지어선의 척수 또는 총톤수 기준 중 1개 항목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.
2. 이 기준에서 “어선” 이나 “선박” 이란 동력선을 말한다.
3. 이 기준에서 “현지어선” 이란 지정하려는 항을 관할하는 시·군·자치구에 선적을 두고, 그 항을 근거지로 이용하는 어선을 말한다.
4. 이 기준에서 “외래어선” 이란 지정하려는 항을 관할하는 시·군·자치구 외의 지역에 선적을 두고, 그 항을 근거지로 이용하는 어선을 말한다.
5. 이 기준에서 해역 구분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.
 - 가. 동해안: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북의 해역 및 연안
 - 나. 서해안: 전라남도 진도군 이북의 해역 및 연안
 - 다. 남해안: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전라남도 해남군을 잇는 연안 및 그 이남 해역(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)
6. 이 기준에서 “도서” 란 육지에서 떨어진 섬을 말하며, 육지를 잇는 연육교 또는 연도교가 설치된 섬은 제외한다.
7. 이 기준에서 기준치는 해당 기준을 관장하는 기관의 통계자료나 확인서에 따른다.